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50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 어기술(營漁技術)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 임.

법률 제 호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행하는"을 "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수산업인·어촌청소년·어촌여성"을 "수산업인, 어촌 청소년·청년·여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| 제2조(정의) ① |
|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"교육훈련사업"이란 국가 및 | 5 |
|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 | |
| 술의 진흥을 위하여 <u>행하는</u> | <u>하는</u> |
|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|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 <u>수산업인·어촌청소년·</u> | 나. 수산업인, 어촌 청소년ㆍ |
| <u>어촌여성</u> 및 이와 관련된 | <u> 청년 · 여성</u> |
|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 | |
| 어기술(營漁技術) 교육훈 | |
| 련 사업 | |
| 다.•라. (생 략) | 다.ㆍ라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